#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4697

발의연월일: 2022. 2. 8.

발 의 자:조승래·김병기·김홍걸

노웅래 • 양정숙 • 양향자

이상헌 · 이용빈 · 장철민

한준호 · 홍문표 의원

(11인)

### 제안이유

최근 미·중 간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기술블록화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주 요국들은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규모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치열하게 경쟁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등을 제외하면 패권경쟁의 중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이 부족하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체계가 개별 이슈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발전과 국가안보·외교·기술주권 확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토대로 국가적 지원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조기 개발·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 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나.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 에 설치하고,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를 설치함(안 제8조).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6조).
- 마.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화교 육기관 지정·운영 등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

터 제28조까지).

- 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인력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허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 사.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전략기술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 아.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부터 제45 조까지).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가치가 현저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국가 생존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어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 2. "기술육성주체"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라. 국공립연구기관
-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 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선진국과의 국 제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여야 한다.
  - ④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기업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추진 체계

- 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 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전략기술의 육성 ·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 2.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대내 외 환경 분석
  - 3. 국가전략기술 육성 목표 설정 및 평가 방법
  - 4. 국가전략기술 육성방향 종합·조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5. 국가전략기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분야별 연구개발 및 연구성 과 관리·확산 등에 관한 사항
  - 6. 국가전략기술의 육성·관리를 위한 혁신 기반, 생태계 조성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7. 국가전략기술의 민간부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에 관한 사항
  - 8. 기본계획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9.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업 혁신활동 지원, 안보분 야 협력, 특허·기술표준 지원, 기술보호, 전략적 국제협력 및 공조 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별 세 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술적 과제, 중장기 달성목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기술로드맵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 1.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
  -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계획
  - 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 업에 관한 기본계획
  - 6.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 7.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창원지원계획
  - 9. 그 밖의 국가전략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계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변

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국가전략기술위원회) ①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국가전략기술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 를 둘 수 있다.
-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 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국내 경제효과 및 연관 산업 기여도
  - 2.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 3. 산업혁신 잠재력 및 사회적 파급효과
  - 4. 국가전략기술로의 선정 및 육성의 시급성과 시의성
  -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변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술육성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술육성주체는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변경 ·해제 절차,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①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책센터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국가전략기술 지식·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과정 등에서 생산·확보된 지식·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식·정보 중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

-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기술육성주체 등에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국가전략기술 지식·정보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의 관리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국가전략기술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 계획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지식·정보의 관리 및 국 가전략기술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과 관 련된 국내외 투자현황, 기술수준, 주요성과, 연관 산업 규모 및 산업 연관 효과, 특허 및 국제표준 분석, 주요 물품의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술육성주체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국제 기술동향의 신속한 파악

-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을 주 기적으로 분석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 정할 수 있다.
  - 1.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기술·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 사 및 분석 지원
  - 2. 국내·외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 3. 국가전략기술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업무 지원
  - 4. 국가전략기술의 선정·변경·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 5. 기본계획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
  - 6.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전략 수립ㆍ이행지원
  - 7.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추진

- 제14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투자확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 여부
  - 2.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 구축 여부
  - 3.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전략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우선순위 제출 시 전략연구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의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성과점검 총괄기관의 지정·운영) ① 국가전략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서 분야별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전략연구과제"라 한다)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 추진 상황 등을 총괄 점검하는 성과점검 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전략연구과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중 제1항에 따라 성과점검총괄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지정된 분야별 성과점검 총괄기관의총괄 점검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과점검 총괄기관은 기술육성주체,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성과점검 총괄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때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

- 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 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 1.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간소화
- 2. 예비타당성조사의 기간 단축
- 3.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시 가점 부여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중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위한 국무회의심의를 직권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규제의 사전분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규제를 사전에 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전략연구사업의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 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제3 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쟁하는 방식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와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면제 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의 지원 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19조(전략연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소관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과제로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에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

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0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으로 개발된 국가전략기술의 상용화 및 관련 서비스의 확산 등을 촉진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국가전략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
  - 2. 국가전략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사례 발굴
  - 3. 국가전략기술과 융합한 제품 ·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 ② 정부는 전략연구사업의 연구 성과물의 실증 및 시험성적서 발급, 국제표준의 인증·검증, 서비스의 개발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 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기술료의 징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전략연구 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 는 자로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 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2조(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확산 등)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

록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 성과확산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벤처투자 촉진 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출자 금
- 2. 제1호 외의 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 3. 그 밖의 부대수입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 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연계·협력하여 기술개발과 실증, 그리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의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소관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정보 통합관리 · 제공
- 2.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 3.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4. 기술수요기업과 기술공급기관의 중개
- 5.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
- 6.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 게 된 경우
- ⑧ 특허청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연구성과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61조에 따라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⑨ 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 및 제5항의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술육 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유출로 인 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 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과제의보안에 관한 항목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부에 알려야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별도의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항목 지정,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제24조(국가전략기술 인력 수급동향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국가전략기술의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2. 국가전략기술 관련 교육 연구기관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4. 그 밖에 인력의 수급동향조사에 필요한 관계 기관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할 수 있다.
- 제25조(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① 정부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력 수급동향조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외 전문인력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추진하여야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략연

구사업의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력양성에 기여한 성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가전략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2.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수요에 따른 인력 양성
- 3.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 4. 국가전략기술 인력 교육 과정 및 콘텐츠 개발
- 5. 국가전략기술 인력 경력개발 지원
- 6.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 7.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전담기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육성 등)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 연구업적이 뛰 어난 연구인력을 우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7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 가전략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우수 인력의 경력을 개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6. 그 밖의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중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학위과정별 학과·전공·교과목 및 정원 등을 결정할 때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중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하거나 기 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특화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 3. 교육기관 지정일 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 특화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및 그 밖에 특화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취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 2. 이민 절차의 완화
  -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 육성에 필요한 지원
  -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 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장 국가전략기술 기반조성

- 제29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육성·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6. 그 밖의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특화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 2.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및 협력
  - 3.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
  -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소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기업공동연구소)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육성·확보와 관련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부지 내에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이하 "공동연구소"라 한다)의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6. 그 밖의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중견기업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연구소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부지 안에 두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동연구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허브의 설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의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육성주체들과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기술 및 산업 발전계획(이하 본 조에서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기술육성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 허브(이하 "지역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

#### 특구진흥재단

-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5.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7.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9.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④ 지역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기술육성주체 간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및 혁신활동 연계· 협력
- 2. 기술육성주체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원천기 술개발
- 3.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이전, 상용화, 사업화 지원
- 4.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적 검증지원
- 5. 국가전략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 시설, 실증시설의 설치 및 운영
- 6.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혁신허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능
- ⑤ 국가는 지역계획 이행 및 지역혁신허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지역혁신허브의 지원 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기술혁신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의 파견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③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인원의 배정 등에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민·관 기술혁신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및 인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조세 및 부담금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연구사 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육성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

- 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 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가전략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연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개발부담금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료·사용료

# 제6장 국가전략기술 협력 및 보호

제34조(안보분야 협력 촉진) ①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전략기 술의 확보를 위하여 협동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성과물이 신속 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연구사업 또는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전략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국방전략기술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국방 전략기술 체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국방전략기술 체계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략연구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자료·연구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에 따라 기술자료·연구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⑦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를 지정 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을 통해 창출된 물자에 대하여 가점 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35조(국가전략기술원의 설립)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국방·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확한 임무설정을 기반으로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국가전략기술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국가전략기술원은 국내·외 기술육성주체 등과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연구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선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④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⑤ 국가전략기술원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시 별도의 지표를 적용하고, 그 정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원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개 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의 근거 규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원의 예산을 총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 ⑦ 국가전략기술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8 국가전략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⑨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국가전략기술원 총괄사업책임자) ① 국가전략기술원에 자율적 이고 도전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총괄사업책임자를 둘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책임자의 업무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우수한 총괄사업책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원이 채용 방법 및 조건, 임금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이해지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책임자의 업무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총괄사업책임자는 「국가재정법」, 「감사원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⑥ 국가전략기술원이 기획·관리하는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본다.
- ⑦ 국가전략기술원은 총괄사업책임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총괄사업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국익증진 및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연구개발, 인력, 산업 등의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육성주체와 협력하여 국제협력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의 원활한 공급 망 확보를 위하여 외교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표

준화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육성주체, 관계 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단체에 대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표준화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재원을 협력의 상대 국과 공동으로 마련하고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재원의 마련·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국제공동연구 추진 지원 등) ① 정부는 제37조에 따른 국제협 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계와 학 계, 연구계가 협력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가전략기술 국제공동연구
  - 2.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 파견, 연수 및 교육훈 련
  - 3.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연구자의 유치 및 활용
  -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동향 파악
  - 5. 외국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 공동행사 등의 교류활동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 제39조(표준화 추진 지원)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개발·이전·확산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 2.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조사 · 연구개발 · 보급 · 확산
  - 3.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 표준 기구 활동 지원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표준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 제7장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

제40조(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의 설치) 국가전략기술 개발·확보 및 관련 계획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한다.

제41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 4.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6.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7.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수입금
-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투자·보조 또는 융자
  - 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지원
  - 나. 국가전략기술 연구장비 구축, 실증 및 성능검증 등을 위한 연 구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다.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
  - 라. 국가전략기술 표준화, 특허,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실증, 시범 사업 등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대한 지원
  - 마. 국가전략기술 창업 및 벤처 등 기업 육성 및 펀드 출자·투자 등 자금지원
  - 바. 국가전략기술개발 · 성과확산 · 협력 등에 대한 지원

- 사. 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 촉진 등을 위한 지원
- 아.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과 관련된 전담기관 지정·운 영, 실태조사, 조사·분석 등에 대한 지원
- 자. 국가전략기술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에 대한 지원
- 차.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차입 원리금의 상환
- 카.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 금 또는 출자금
- 3.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4.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특별회계는 전략연구사업에 우선 활용한다.
  - ④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특별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③ 특별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 제44조(예산의 이월 등) 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수 없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 ③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45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

-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8장 보칙

- 제4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 감독한다.
-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 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전략연구사업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략 연구사업의 지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